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과의 배치되는 조례내용 개정

□ 주요골자

- 장학생의 의무근무기간 조정 : 특별훈련기간의 2배
⇒ 훈련기관과 동일한 기간(국내 일과후의 특별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5할)

□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와 제14조
-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”을 “훈련기간과 동일한(국내에서 일과후에만 실시하는 특별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